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제작결합의 시정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민자도로 금융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및 연계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정건설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하고속도로 건설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지방권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실 밑에 두던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모빌리티자동차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되, 정원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수도권 민자도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지방항공청에 초대형 항공교통 관제훈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명칭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종전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두는 한시정원 1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6명, 7급 5명, 경정 1명) 중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은 감축하며, 국토교통부에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11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9급 2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12명(7급 4명, 8급 2명, 9급 6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및 지방항공청 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9.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항공정책실”을 “항공정책실·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항공정책실”을 “항공정책실·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3명”을 각각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7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추진

58.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총괄

59.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60. 공간정보의 취득·관리 및 공개 등 활용에 관한 사항

61.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디지털 국토 엑스포의 개최·홍보

62. 국가측량정책 및 지적정책의 수립·조정

63. 국가 3차원 공간정보·지하 시설물 등 인프라의 구축 및 정비

64. 공간정보 관련 인력의 양성, 공간정보 표준화 지원·참조체계 등

기술기반의 확충 및 연구·개발

- 65.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 66. 지적 재조사 추진 및 지적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67. 지적공부의 관리 및 지적정보화의 추진
- 68. 지적측량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수수료의 고시
- 69. 지적측량수행자 관련 업무
- 70.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 71. 지적·부동산 등 공간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 72. 공간정보의 유통 및 관리
- 73. 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관리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4명”을 각각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1호의2 및 제60호부터 제7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3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5호의2, 제16호 및 제43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제20호의2 중 “드론”을 “드론(도심항공교통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이하 “모빌리티”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2.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3.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육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총괄·조정
6. 육상·항공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설치·운영
7. 교통 신기술 개발, 보급 및 실용화 촉진
8.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제도 운영
9. 신교통수단의 도입 촉진 및 보급
10. 개인형 이동수단 등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11. 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12.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정·운용 및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13. 자동차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인증제도 및 제작결함 시정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5.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1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자동차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운행(임시운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8.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19.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관리 관련 법령, 자동차저당 관련 법령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21. 자동차관리사업(매매·정비·해체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대책 제도의 운용
22. 자동차 검사·점검, 택시미터검정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제도의 운용
2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도의 운용
2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제사업 및 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제54조제2항 중 “86명”을 “87명”으로 한다.

제58조의3의 제목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23년 3월 31일”을 “2025년 3월 31일”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제58조의3제4항 중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000”을 “1,0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989”를 “99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60”을 “96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564”를 “2,548”로 하고, 일반직 계 “2,564”를 “2,54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555”를 “2,539”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모빌리티자동차국 1개 과	3명
------------------	----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3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의 정원 11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9급 2명)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

원 20명(6급 3명, 7급 7명, 8급 4명, 9급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별표 5]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58조의3제4항 관련)

부동산소비자보호기확단(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3
일반직 계	12
3급 또는 4급 이하	12
특정직 계	1
경정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 국토도시실 · 주택 토지실 · 건설정책국 · 교통물류 실 · <u>항공정책실</u> · 도로국 및 철 도국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 -- <u>항공정책실 · 모빌리티자동차</u> <u>국</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 ② (생 략)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차관은 교통물류실 · <u>항 공정책실</u> · 도로국 및 철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 한다.	③ ----- <u>항 공정책실 · 모빌리티자동차국</u> -- ----- -----.
제9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생 략)	제9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③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u>12의2.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 책의 총괄 · 조정 및 지원</u>
13. ~ 43. (생 략)	13. ~ 43. (현행과 같음)
제11조(국토도시실) ① 국토도시 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 에 정책관등 <u>3명</u> 을 둔다.	제11조(국토도시실) ① ----- ----- ----- <u>4명</u>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u>3명</u> 은 고	② ----- <u>4명</u> -----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토도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③ -----
-----.

1. ~ 56. (현행과 같음)

57.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공간
정보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추진

58.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의 추진·총괄

59.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분
과위원회의 운영

60. 공간정보의 취득·관리 및
공개 등 활용에 관한 사항

61.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디지털 국토 엑스포의 개
최·홍보

62. 국가측량정책 및 지적정책
의 수립·조정

63. 국가 3차원 공간정보·지하
시설물 등 인프라의 구축 및
정비

64. 공간정보 관련 인력의 양성,
공간정보 표준화 지원·참조
체계 등 기술기반의 확충 및
연구·개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주택토지실) ① 주택토지
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
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21. (생 략)

21의2.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

65.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
영 지원

66. 지적 재조사 추진 및 지적발
전 기본계획의 수립

67. 지적공부의 관리 및 지적정
보화의 추진

68. 지적측량 기술개발 및 지적
측량수수료의 고시

69. 지적측량수행자 관련 업무

70.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71. 지적·부동산 등 공간정보
의 수집·가공 및 제공

72. 공간정보의 유통 및 관리

73. 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관리

제12조(주택토지실) ① -----

----- 3명-----.

② ----- 3명-----

-----.

③ -----
-.

1. ~ 21. (현행과 같음)

<삭 제>

<u>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u>	
22. ~ 59. (생략)	22. ~ 59. (현행과 같음)
60. <u>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공간 정보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추진</u>	<u><삭제></u>
61. <u>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의 추진·총괄</u>	<u><삭제></u>
62. <u>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분 과위원회의 운영</u>	<u><삭제></u>
63. <u>공간정보의 취득·관리 및 공개 등 활용에 관한 사항</u>	<u><삭제></u>
64. <u>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디지털 국토 엑스포의 개 최·홍보</u>	<u><삭제></u>
65. <u>국가측량정책 및 지적정책 의 수립·조정</u>	<u><삭제></u>
66. <u>국가 3차원 공간정보·지하 시설물 등 인프라의 구축 및 정비</u>	<u><삭제></u>
67. <u>공간정보 관련 인력의 양성, 공간정보 표준화 지원·참조 체계 등 기술기반의 확충 및 연구·개발</u>	<u><삭제></u>
68. <u>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 영 지원</u>	<u><삭제></u>
69. <u>지적 재조사 추진 및 지적발</u>	<u><삭제></u>

<u>전 기본계획의 수립</u>	
70. <u>지적공부의 관리 및 지적정보화의 추진</u>	<삭 제>
71. <u>지적측량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수수료의 고시</u>	<삭 제>
72. <u>지적측량수행자 관련 업무</u>	<삭 제>
73. <u>국가공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u>	<삭 제>
74. <u>지적·부동산 등 공간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u>	<삭 제>
75. <u>공간정보의 유통 및 관리</u>	<삭 제>
76. <u>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관리</u>	<삭 제>
제15조(교통물류실) ① 교통물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u>3명</u>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u>3명</u>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제15조(교통물류실) ① ----- ----- ----- <u>2명</u>-----. ② ----- <u>2명</u>----- ----- -----. ③ ----- -----.
12. <u>육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총괄·조정</u>	1. ~ 11. (현행과 같음)
13. <u>육상·항공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설치·운영</u>	<삭 제>

14. <u>교통 신기술 개발, 보급 및 실용화 촉진</u>	<u><삭 제></u>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5의2. <u>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제 도 운영</u>	<u><삭 제></u>
16. <u>신교통수단의 도입 촉진 및 보급</u>	<u><삭 제></u>
17. ~ 42. (생 략)	17. ~ 42. (현행과 같음)
43. <u>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u>	<u><삭 제></u>
44. <u>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정· 운용 및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u>	<u><삭 제></u>
45. <u>자동차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u><삭 제></u>
46. <u>자동차 인증제도 및 제작결 함 시정 등 소비자 보호에 관 한 사항</u>	<u><삭 제></u>
47. <u>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 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 운영</u>	<u><삭 제></u>
48. <u>자동차관리 관련 법령, 자동 차저당 관련 법령 및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의 운용</u>	<u><삭 제></u>
49. <u>자동차관리사업(매매·정비</u>	<u><삭 제></u>

<u>· 해체재활용) 관련 제도개선</u> <u>및 소비자 보호대책 제도의</u> <u>운용</u>	
50. <u>자동차 검사·점검, 택시미</u> <u>터검정 및 자동차 내압용기</u> <u>안전관리 제도의 운용</u>	<삭 제>
51. <u>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u> <u>도의 운용</u>	<삭 제>
52. <u>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u> <u>업의 공제사업 및 공제조합에</u> <u>관한 사항</u>	<삭 제>
53. <u>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u> <u>원에 필요한 자동차관리 및</u> <u>안전에 관한 사항</u>	<삭 제>
54. <u>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u> <u>래형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u> <u>등 운행(임시운행을 포함한</u> <u>다)에 관한 사항</u>	<삭 제>
55. <u>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u> <u>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u> <u>전기술의 개발·운영</u>	<삭 제>
56. <u>개인형 이동수단 등 차세대</u> <u>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 및</u> <u>안전기술의 개발·운영</u>	<삭 제>
제16조(항공정책실) ①·② (생 략)	제16조(항공정책실)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20의2. 드론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1. ~ 66. (생략)

<신설>

③ -----
-.

1. ~ 20. (현행과 같음)

20의2. 드론(도심항공교통은 제외한다) -----
--

21. ~ 66.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이하 “모빌리티”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2.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3.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력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육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
형교통체계 총괄·조정

6. 육상·항공 국가통합교통정
보센터의 설치·운영

7. 교통 신기술 개발, 보급 및
실용화 촉진

8.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제도
운영

9. 신교통수단의 도입 촉진 및
보급

10. 개인형 이동수단 등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11. 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12.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정·
운용 및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13. 자동차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인증제도 및 제작결
합 시정 등 소비자 보호에 관
한 사항

15.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1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자동차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운행(임시운행을 포함한)에 관한 사항
18.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19.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관리 관련 법령, 자동차저당 관련 법령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21. 자동차관리사업(매매·정비·해체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대책 제도의 운용
22. 자동차 검사·점검, 택시미터검정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제도의 운용

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둔다.

②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신 설>

④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두
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두
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은 국세청, 2명(4급 또는 5급 1
명, 6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
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생략)

-----부동
산소비자보호기획단-----.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③ _____
_____.

1. ~ 4. (현행과 같음)

5.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④ 부동산소비자보호기 획단---

-----.

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 1명(4급 또는 5급 1
명)-----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한시정원) ① ~ ④ (생략)	제59조(한시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u> 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⑤ ----- ----- ----- ----- <u>2024</u> <u>년 12월 31일</u> ----- ----- --.
⑥ ~ ⑫ (생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00</u>	<u>1,006</u>	+6
·	·	·	
·	·	·	
일반직 계	<u>989</u>	<u>995</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60</u>	<u>966</u>	+6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64</u>	<u>2,548</u>	-16
일반직 계	<u>2,564</u>	<u>2,548</u>	-1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555</u>	<u>2,539</u>	-16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0